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명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31 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
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등”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1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협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한 후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8조제1항 중 “법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u>」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u>」 제7조----- ----- -----필요한----- -----.</p> <p>제4조(정책지원관) ① <u>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u></p> <p>② <u>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u> 2. <u>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u> 3. <u>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u> 4. <u>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u> 5. <u>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취합·분석 지원</u>

	<p>6. <u>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u></p> <p>7. <u>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u></p> <p>③ <u>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	---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 ----- -----..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등 ----- ----- ----- -----..

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의1(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의장은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2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협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제19조의2 (생략)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3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한 후 호명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제>

③ -----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삭제>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주민----- . 다만, 비밀로 할 필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9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서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

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9

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신설>

5조-----

-----.

④·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 설>

제9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